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7. 19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7. 19

(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- '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우리군 공무원 165명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완료 하였으나
-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직별 식급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2003. 2. 28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
 - 초과현원 : 17 명
 - 7급 : 1 명, · 8급: 10 명, · 9급: 1 명
 - 기능9급: 1 명, · 기능10급: 4 명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사 대통령령 제16550호로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”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생략 (신설)</p>	<p>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생략 ① (현행 본문과 같음)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 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은 2003년 2 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